

식 물 방 역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2023. 11.

농 립 축 산 식 품 부
(식량산업과)

1. 개정이유

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거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위임 근거 마련(안 제6조제1항제1의2)

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

나.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(안 제6조의2제2항)

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에 제1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
제6조의2제1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
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
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~ 24. (생략) ③ (생략) 제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1. ~ 5. (생략) ② (생략)	제6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</u> 2. ~ 24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<u>1.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무</u> 2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2984, 2985